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7년 12월 26일(화) 16시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7. 12. 26.(화)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고낙준 과 장(☎2110-1420)
김우석 서기관(☎2110-1421)

방통위, 주요 지상파 TV, 라디오, DMB 재허가 의결

- KBS, MBC, SBS 등 14개 지상파방송사 147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 (재)극동방송 여수FM방송국은 평가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자사의 타 FM방송국과 허가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허가기간 조정요청을 수용하여 2년으로 재허가 하였음. (심사결과 붙임 참조)

한편,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하여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하였으며,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고,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고 역시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 공정성과 종사자에 대한 부당 징계 논란,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다.

특히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여 자체제작과 외주 제작 프로그램 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지난 19일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 대책” 내용들을 골자로 방통위가 제시하는 “외주제작 거래 기준”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KBS,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반드시 개최하

도록 하는 등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진 등 재난재해의 빈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 하였고, MBC와 SBS에 대해 고화질 DMB 방송을 내년 3월 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전체 DMB 방송사가 고화질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무도 강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허가 신청서 작성 사항 표준화,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보완 및 재허가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2. 재허가 조건 및 권고 내용. 끝.

< 붙임 1 >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 재허가 :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사업자 147개 방송국

평가점수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
650점 이상 ~ 700점 미만 (14개사 133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DTV 30개, 라디오 73개 방송국 ○ (주)문화방송 라디오 1개 방송국 ○ (주)에스비에스 라디오 3개 방송국 ○ 한국교육방송공사 DTV 1개, 라디오 1개 방송국 ○ 부산문화방송(주) DTV 1개, 라디오 3개 방송국 ○ (주)엠비씨경남 DTV 2개, 라디오 6개 방송국 ○ 대전문화방송(주) 라디오 1개 방송국 ○ (주)케이엔엔 DTV 1개, 라디오 2개 방송국 ○ (주)대전방송 DTV 1개, 라디오 1개 방송국 ○ 서울특별시 라디오 2개 방송국 ○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각 DMB 1개 방송국	3년 ('18.1.1. ~ '20.12.31)
	○ (재)극동방송 라디오 1개 방송국 ※ 방송사 요청에 따라 자사의 타 FM방송국과 허가기간 일치	2년 ('18.1.1. ~ '19.12.31)
650점 미만 (4개사 14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5개) - 제1DTV방송국, 제2DTV방송국, 제1AM방송국, 제1표준 FM방송국, 지상파DMB방송국 ○ (주)문화방송(4개) - DTV방송국, AM방송국, 표준FM방송국, 한국문화지상파 DMB방송국 ○ (주)에스비에스(2개) - DTV방송국, 지상파DMB방송국 ○ 대전문화방송(주)(3개) - DTV방송국, AM방송국, 표준FM방송국	3년 ('18.1.1. ~ '20.12.31)

□ 방송국별 평가 결과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400)	재허가 평가 (650)	합계 (1,000)
1	한국방송공사	KBS 제1DTV방송국	347.85	330.78	646.31
2	한국방송공사	KBS 제2DTV방송국	322.13	351.55	641.60
3	한국방송공사	KBS 제1AM방송국	341.02	337.90	646.59
4	한국방송공사	KBS 제2AM방송국	313.17	371.15	651.73
5	한국방송공사	KBS 제1표준FM방송국	341.02	337.90	646.59
6	한국방송공사	KBS 제2표준FM방송국	313.17	371.15	651.73
7	한국방송공사	KBS 제1FM방송국	317.53	369.78	654.58
8	한국방송공사	KBS 제2FM방송국	314.98	372.90	655.12
9	한국방송공사	KBS 경인제1DTV방송국	339.07	346.40	652.83
10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제1AM방송국	-	442.40	680.62
11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제2AM방송국	-	441.40	679.08
12	한국방송공사	KBS 사랑의소리AM방송국	-	443.40	682.15
13	한국방송공사	KBS (김제)국제방송	-	440.53	677.73
14	한국방송공사	KBS 국군FM방송국	-	442.78	681.19
15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DTV방송국	343.70	344.03	654.98
16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2DTV방송국	335.12	352.48	654.85
17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AM방송국	336.84	369.65	672.85
18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표준FM방송국	336.84	369.65	672.85
19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2표준FM방송국	311.68	373.78	652.81
20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FM방송국	309.05	376.03	652.45
21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DTV방송국	343.06	343.53	653.89
22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2DTV방송국	334.94	352.48	654.68
23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AM방송국	334.76	366.40	667.77
24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표준FM방송국	334.76	366.40	667.77
25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2표준FM방송국	310.61	373.53	651.56
26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FM방송국	309.98	374.78	652.15
27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DTV방송국	343.38	343.53	654.20
28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DTV방송국	336.18	352.48	655.86
29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AM방송국	338.18	367.90	672.46
30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AM방송국	312.53	372.03	651.96
31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표준FM방송국	338.18	367.90	672.46
32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표준FM방송국	312.53	372.03	651.96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400)	재허가 평가 (650)	합계 (1,000)
33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FM방송국	311.78	373.53	652.67
34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DTV방송국	342.96	343.53	653.80
35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2DTV방송국	334.94	352.48	654.68
36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AM방송국	334.20	368.40	669.14
37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표준FM방송국	334.20	368.40	669.14
38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2표준FM방송국	310.92	373.53	651.85
39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FM방송국	310.52	373.53	651.47
40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DTV방송국	339.91	344.03	651.37
41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2DTV방송국	333.84	352.48	653.63
42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AM방송국	335.44	366.90	668.90
43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표준FM방송국	335.44	366.90	668.90
44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2표준FM방송국	311.38	372.65	651.46
45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FM방송국	313.25	372.28	652.88
46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DTV방송국	340.27	344.03	651.71
47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2DTV방송국	334.24	351.98	653.54
48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AM방송국	335.40	370.53	672.31
49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표준FM방송국	335.40	370.53	672.31
50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2표준FM방송국	311.15	372.78	651.36
51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FM방송국	310.72	372.78	650.95
52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DTV방송국	343.31	343.53	654.13
53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2DTV방송국	335.34	351.98	654.59
54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AM방송국	337.04	370.53	673.87
55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표준FM방송국	337.04	370.53	673.87
56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2표준FM방송국	312.23	373.78	653.34
57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FM방송국	311.59	374.03	652.97
58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DTV방송국	339.08	344.03	650.58
59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2DTV방송국	334.09	352.48	653.87
60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AM방송국	337.12	370.28	673.71
61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표준FM방송국	337.12	370.28	673.71
62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2표준FM방송국	311.27	373.15	651.83
63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FM방송국	313.33	373.90	654.50
64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DTV방송국	340.32	344.03	651.76
65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2DTV방송국	335.40	352.48	655.12
66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AM방송국	336.82	369.78	672.95
67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표준FM방송국	336.82	369.78	672.95
68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2표준FM방송국	312.38	372.90	652.65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400)	재허가 평가 (650)	합계 (1,000)
69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FM방송국	314.54	372.90	654.70
70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DTV방송국	340.40	344.03	651.83
71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2DTV방송국	335.96	352.18	655.37
72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AM방송국	331.38	372.53	670.39
73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표준FM방송국	331.38	372.53	670.39
74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FM방송국	301.17	381.65	650.30
75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DTV방송국	339.94	344.03	651.40
76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AM방송국	329.88	370.78	667.29
77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표준FM방송국	329.88	370.78	667.29
78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FM방송국	302.44	380.78	650.68
79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제1DTV방송국	342.56	343.53	653.41
80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1AM방송국	334.40	372.15	672.90
81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제1표준FM방송국	334.40	372.15	672.90
82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제1DTV방송국	340.49	344.03	651.92
83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1AM방송국	334.27	370.65	671.35
84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제1표준FM방송국	334.27	370.65	671.35
85	한국방송공사	KBS 울릉1AM방송국	333.21	370.65	670.34
86	한국방송공사	KBS 울릉제1표준FM방송국	333.21	370.65	670.34
87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DTV방송국	340.75	343.53	651.69
88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AM방송국	330.24	371.78	668.59
89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표준FM방송국	330.24	371.78	668.59
90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FM방송국	304.02	380.53	651.95
91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DTV방송국	341.59	343.53	652.49
92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AM방송국	330.98	372.28	669.77
93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표준FM방송국	330.98	372.28	669.77
94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제1DTV방송국	342.31	343.53	653.18
95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제1라디오FM방송국	334.75	372.78	673.83
96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FM방송국	307.99	376.03	651.44
97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DTV방송국	340.39	344.03	651.82
98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2DTV방송국	332.21	352.18	651.80
99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AM방송국	333.61	371.78	671.80
100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표준FM방송국	333.61	371.78	671.80
101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FM방송국	307.40	377.53	652.31
102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DTV방송국	340.32	344.03	651.76
103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AM방송국	333.16	371.78	671.37
104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표준FM방송국	333.16	371.78	671.37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400)	재허가 평가 (650)	합계 (1,000)
105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FM방송국	306.95	376.65	651.05
106	한국방송공사	KBS 제3표준FM방송국	-	439.40	676.00
107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	440.90	678.31
108	한국방송공사	KBS 지상파DMB방송국	326.65	331.05	626.38
109	(주)문화방송	MBC DTV 방송국	331.00	316.13	616.31
110	(주)문화방송	MBC AM방송국	339.25	338.10	645.10
111	(주)문화방송	MBC 표준FM방송국	339.25	338.10	645.10
112	(주)문화방송	MBC FM방송국	332.72	352.85	652.92
113	(주)문화방송	한국문화지상파DMB방송국	343.04	324.79	636.03
114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DTV방송국	347.14	325.48	640.59
115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AM방송국	326.73	351.98	646.39
116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표준FM방송국	326.73	351.98	646.39
117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FM방송국	322.50	362.85	652.71
118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DTV방송국	340.56	347.40	655.20
119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AM방송국	315.18	369.90	652.46
120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표준FM방송국	315.18	369.90	652.46
121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FM방송국	313.45	373.65	654.38
122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DTV방송국	340.56	347.15	654.96
123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AM방송국	315.18	369.90	652.46
124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표준FM방송국	315.18	369.90	652.46
125	(주)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FM방송국	313.45	372.15	652.95
126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DTV방송국	344.89	348.68	660.54
127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AM방송국	323.00	360.80	651.24
128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표준FM 방송국	323.00	360.80	651.24
129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FM방송국	316.53	367.68	651.62
130	(주)에스비에스	SBS DTV방송국	331.31	348.25	647.20
131	(주)에스비에스	SBS AM방송국	332.30	367.38	666.36
132	(주)에스비에스	SBS표준FM방송국	332.30	367.38	666.36
133	(주)에스비에스	SBS FM방송국	328.79	367.38	663.01
134	(주)에스비에스	SBS지상파DMB방송국	340.16	325.85	634.30
135	(주)케이엔엔	KNN DTV방송국	336.67	352.05	655.92
136	(주)케이엔엔	KNN FM방송국	332.19	366.78	665.68
137	(주)케이엔엔	KNN 제2FM방송국	-	434.15	667.92
138	(주)대전방송	TJB DTV방송국	339.65	343.48	650.60
139	(주)대전방송	TJB FM방송국	315.87	370.75	653.92
140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DTV방송국	368.47	363.60	697.21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400)	재허가 평가 (650)	합계 (1,000)
141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FM방송국	325.66	396.60	687.87
142	서울특별시	교통FM방송국	384.36	346.19	695.76
143	서울특별시	영어FM방송국	363.41	351.65	681.00
144	(재)극동방송	극동여수FM방송국	317.92	380.28	664.95
145	(주)와이티엔디엠비	YTNDMB 지상파DMB방송국	326.19	389.05	681.18
146	한국디엠비(주)	한국DMB 지상파DMB방송국	344.84	351.25	662.94
147	유원미디어(주)	유원미디어 지상파DMB방송국	329.75	355.00	652.14

※ 방송평가 400점 만점, 재허가평가 650점 만점, 총점 1,050점 만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계점수로 산정

- 방송평가가 없는 방송국의 경우 재허가평가 650점 만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붙임 2 >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가. 지상파 TV·라디오

①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관련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제작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에 대해 아래 사항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측 또는 종사자측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 -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합의하에 미개최 가능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측 또는 종사자측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는지 24시간 이내에 개최 - 회의 결과를 공지 또는 공개 - 단체협약 미체결로 편성위원회 또는 편성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 단체협약과의 분리 등 편성위원회 지속 가능방안을 마련 - 양측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시청자위원회 또는 중재·자문위원회 활용 방안 등을 마련 	조건	KBS, MBC, 지역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또는 편성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를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할 것 	조건	MBC 대전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경우 시청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것 	권고	지역MBC 지역민방 라디오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②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지역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 직업, 성별 등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한 시청자 위원 선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권고	전체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시청자위원 선임 시 관련 경과 및 추천 단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것	권고	전체 (tbs 교통FM, 극동여수 제외)
③ 시청자 권익	○ 시청자들이 방송사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 제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고지, 방송자막 송출(TV), 안내 멘트(라디오)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 개진 창구를 안내할 것 ○ 시청자 민원(불만) 접수·처리 절차, 민원 유형 분석 및 내부 피드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권고	전체
	○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 접수 및 처리 개선과 시청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권고	tbs
④ 난시청 해소	○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전체
⑤ 수신료 민원	○ 수신료 민원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감면, 할인 제도 홍보 강화 계획 포함)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KBS
⑥ 사회 환원	○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여 방송분야 등에 환원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SBS
	○ 세전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도 사회 공헌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이행할 것	권고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⑦ 계열사 거래	○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열 회사와의 SBS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SBS 미디어홀딩스 계열사 간 이전거래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SBS
	○ 2007년도 변경허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시 제출한 이행각서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	조건	SBS
⑧ 독립 법인화	○ 의사 결정의 자율성, 방송의 공정성, 자원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특별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립 법인화 계획을 마련하여 '18.12.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tbs
⑨ 공정성 실현	○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경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것	권고	전체 (극동여수 제외)
⑩ 업무 추진비	○ 대표자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할 것	권고	KBS EBS
⑪ 수능 교재	○ 수능교재 내용 오류 개선과 수능 연계교재 판매 관련 불공정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권고	EBS
⑫ 광역화	○ 지역MBC 간의 광역화 추진시 내부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할 것	권고	지역MBC

②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관련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콘텐츠 투자	○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비율 이상(KBS 지역국 3%, 지역MBC 10%, 지역민방 14%)으로 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KBS 지역MBC 지역민방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극동여수
	○ 제작인력 전문성 강화 계획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	권고	부산MBC
② 외주 제작	○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전체 (라디오 제외)
	○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방송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재허가 후 1년 이내에 자체제작프로그램 표준제작 단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조건	KBS EBS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③ 지역 콘텐츠	○ 지역국의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비율(총국 9개사 10%, 울산방송국 7%, 울산방송국을 제외한 8개 지역국 3%) 이상으로 할 것	조건	KBS
	○ KBS경인제1TV의 자체 프로그램 편성·제작 계획을 최초 허가시 제시한 계획에 준하여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지역총국 또는 지역MBC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확대하되, 심야 또는 낮 시간대 송출을 지양할 것	권고	KBS MBC
	○ 지역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제작 및 자체 편성 비율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권고	지역MBC 지역민방
④ 시청자 프로그램	○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권고	MBC SBS EBS
	○ 지역방송 시청자 의견수렴 활성화 및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시청자평가원을 위촉할 것	권고	지역민방
⑤ 보도·시사 프로그램	○ 사측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일방의 주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	권고	MBC
	○ 시사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할 것		
⑥ 공익적 프로그램	○ 지진 등 재난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고령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마련할 것	권고	EBS
	○ 재난방송, 어린이·다문화·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할 것	권고	전체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⑦ 콘텐츠 다양성	○ 방송프로그램 포맷 개발 등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	권고	MBC SBS
⑧ 부편성	○ 방송편성 관련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권고	tbs
⑨ 진행자·출연자 부당 교체	○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출연자 교체 시 시청자·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할 것	권고	KBS MBC
⑩ 합병 지역 간 균형	○ 동·서부 경남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과 인력운영 균형 유지 및 효율성 제고 계획을 시청자·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매년 4월말까지 그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MBC경남
⑪ 재방 편성 등	○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조건	전체 (라디오 제외)
	○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	권고	
	○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이상 시청자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영할 것		
⑫ 방송콘텐츠 보관	○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 포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데이터 훼손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중화하여 보관할 것	권고	전체

3] 경영·재정·기술 관련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경영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전문경영인의 독립적 경영 보장을 위해 최다액출자자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각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지역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책임 경영 실현을 위해 대표이사(각자대표 및 공동대표) 간의 업무분장사항(권한 범위)을 정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방송전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지역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SBS 지역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MBC 대표자 선임 시,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권고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선임 시,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권고	지역민방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② 경영 합리화	○ 이사장 및 임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및 전보의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년 4월 말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극동여수
	○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유보금 운영 기준 및 계획 등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지역MBC 지역민방
	○ 위험자산 투자시 안정적 경영 기반을 잠식하지 않도록 투자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 절차에 따라 투자할 것	권고	
	○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 지역MBC로부터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MBC
	○ 신사옥 건립 계획 수립·추진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투자 확대와 재무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	권고	부산MBC
	○ 기본재산 처분, 기부금 집행 및 회계감사 기준 등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권고	극동여수
③ 부당 해직·징계	○ 부당한 해직 및 징계를 방지하고 경영권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인사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할 것 - 재심은 최초 심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조건	KBS MBC
	○ 징계 관련 제도의 객관성을 제고할 것	권고	전체 (KBS MBC 제외)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④ 조직 안정화	○ 기존 인력과 신규·경력직, 파업 참가자와 미참가자 등 간의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	권고	MBC 대전MBC
⑤ 일자리	○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7년 재허가 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권고	전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할 것	권고	KBS MBC SBS
⑥ 감사원 감사 결과	○ 과도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	조건	KBS
	○ 과도한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비법정 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이행할 것	권고	KBS
⑦ 노사합의 이행	○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권고	SBS
⑧ 부대사업 운영	○ 방송사업 이외의 부대사업을 위한 법인 또는 부설기관 운영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대사업 법인 등의 대표와 방송사 임직원을 분리하여 운영할 것	권고	지역MBC
	○ 방송사업 이외의 부대사업 추진시, 방송사로서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방송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것	권고	지역MBC 지역민방
⑨ 연구개발 투자 등	○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 제출하고 이행할 것. 단, 개선계획 수립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것	조건	KBS
	○ 국산 방송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와 국산장비 활용을 확대할 것	권고	전체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⑩ 방송사고 방지	○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고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	조건	MBC경남
	○ 무인송신소 사고재발 방지 등 방송 송출 안정성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	조건	부산MBC
⑪ 혼신 해소 등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조건	전체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④ 방송발전 지원 관련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지역 네트워크 지원	○ 방송산업 및 중앙·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배분 등에 있어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권고	MBC SBS
② 협찬 운영 등	○ 간접광고, 협찬 등 심의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율심의를 강화할 것	권고	전체
	○ 과도한 협찬 운영을 지양할 것	권고	tbs

5 기타 사업수행 관련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재난방송	○ 긴급재난(지진규모 5.0 이상, 민방위 경보)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을 자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	조건	전체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자체예산을 활용한 재난방송을 강화할 것	권고	KBS
	○ 방송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연 1회 이상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지역MBC 지역민방

나. 지상파DMB

①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관련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고화질 D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고화질 채널과 동시송출 중인 저화질(SD급) 채널의 동시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송출을 중단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것(단, MBC·SBS는 고화질 채널 도입 이후 적용) ※ 협의사항 : 종료시점, 시청자보호대책, 향후 채널 운영계획 등 	조건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고화질 채널을 도입·운영하되, 고화질 채널과 저화질 채널을 동시송출할 것 	조건	MBC SBS
② 시청자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시청자위원 선임 시 관련 경과 및 추천 단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것 	권고	독립DMB 3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지역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 직업, 성별 등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한 시청자위원 선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③ 시청자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들이 방송사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 제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고지, 방송자막 송출(TV), 안내 멘트(라디오)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 개선 창구를 안내할 것 	권고	독립DMB 3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민원(불만) 접수·처리 절차, 민원 유형 분석 및 내부 피드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②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관련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콘텐츠 관련	○ 지상파DMB의 매체적 역할 제고를 위해 재허가시 제출한 지상파 DMB 전용 콘텐츠의 제작 및 확보 계획을 준수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전체

③ 경영·재정·기술 관련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상파DMB의 서비스, 기술, 콘텐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방송 시설 투자 등 지상파DMB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전체
	○ 음영지역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② 주파수 관리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조건	전체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③ 경영 안정화	○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재무 안정성 확보 방안 및 중장기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권고	독립DMB 3개사
	○ 자본잠식이 해소될 때까지 영업 이익은 방송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서만 사용할 것	조건	
	○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결과를 매 사업연도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 한국DMB(주)는 최다액출자자인 (주)옵니네트웍스의 외부 회계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결과도 매 사업연도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7년 한국DMB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조건 반영	조건	한국DMB
	○ 한국DMB(주)는 최다액출자자인 (주)옵니네트웍스의 해외사업에 콘텐츠 무상 제공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양자 간 콘텐츠 거래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7년 한국DMB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조건 반영	조건	한국DMB

4 기타 사업수행 관련

유형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① 재난방송	○ 긴급재난(지진규모 5.0 이상, 민방위 경보)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을 자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	조건	전체